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

-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동 개정안을 통해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킴.
 - 최근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우려와 일반 보험계약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법개정을 통해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함.
 - 보호 범위는 최대 5천만원이고 변액보험 전체가 아닌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기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으로 정함.

- 변액보험 상품의 보험료 운영은 특별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상품이 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보험금을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.
 - 변액보험은 보험금 규모가 보험료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보험계약별 운용실적 분리를 위해 변액보험 보험료는 일반계정과 별도로 특별계정에서 운영함.
 - 특별계정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최소보험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의 대가로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최저보증준비금으로 일반계정에 적립함.

- 변액보험의 경우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파산위험에 노출되어 있고, 최저보장보험금의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인 일반 보험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타의 다른 보험계약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있음.
 -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변액보험 계약자는 일반계정이 최저보장보험금 지급 약정을 불이행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계약이전도 곤란해질 우려가 제기됨.
 - 최저보장보험금을 초과하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은 투자성이 강하나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함.
 - 보험회사 파산 시 일반보험 계약자는 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받는 반면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보호에서 제외될 경우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.

(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, 금융위 등, 9/1)